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29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발의일자 : 2023년 08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08월 21일

2. 제안이유

-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포괄적 기능의 ‘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함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성평등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설치 조항을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 ‘자문’ 조항으로 개정
- 나.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설치 관련 조항 삭제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됨.

나.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운영 현황

-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성인지 예산제의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제정되었음.
- 그리고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가 구성·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 2월 위원 임기 만료 이후 위원회 통합 정비를 위해 신규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성인지예산운영협의체 개요 >

- 구성 : 총 13인 (임기: 2021.2.15. ~ 2023.2.14.)
 - 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 당연직(4) : 예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재무과장,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위촉직(9) : 시의회(2), 성평등위원회 추천(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추천(1), 여성단체(1), 기타 전문가(4)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선정 기준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성별, 청년, 장애인 비율 고려한 위원회 구성
- 기능 :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 지침서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한편 서울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난 2012년에 ‘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어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는바,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와 ‘성평등위원회’가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중복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적 측면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주요 개정 사항 검토

- 서울시는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2023.3.31.)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다른 위원회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폐지하고, ‘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되(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안 제20조제1항),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
- 이와 같이 성평등 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분절되어 논의되던 사항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할 수 있음.
- 다만, 기존의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성평등위원회’의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관련된 기타 자문 내용은 ‘성평등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기능 조정을 통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인바(2023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2023.7.4.),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위원회 통합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 조례의 개정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1항의 분과회의는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젠더폭력 예방·안전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 노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담당 조사관	연락처
송선옥	02-2180-8064